

제 C-2019-029164 호



## 저작권 등록증

1. 저작물의 제호(명칭)      자료처리기(STD L-800) Firmware
2. 저작물의 종류          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>시스템프로그램>미들웨어
3. 저작자 성명(법인명)      주식회사 씨텍  
 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
4.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   180111-0799867
5. 창작연월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년09월30일
6. 공표연월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년10월15일
7. 등록연월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년10월17일
8. 등록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저작자 : 주식회사 씨텍,  
   창작 : 2019.09.30, 공표 : 2019.10.15

『저작권법』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2019년 10월 18일

한국저작권위원회



# 유의사항

## 1.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

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“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”에 대하여는 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2. 등록부 열람·사본 교부

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하면 저작권·저작인접권·배타적발행권·출판권·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3. 주소·명칭 등의 변경·경정 등록

이미 등록된 사실(주소·연락처 또는 법인의 경우 단순 상호 변경 등)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·경정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를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.

## 4. 권리변동 등의 등록

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해 양도·질권설정·처분제한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무자로서 등록권리자가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.

## 5.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

등록된 저작권·저작인접권·배타적발행권·출판권·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자는 법적인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, 권리자는 저작권법에 의거 침해금지 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침해에 대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할 수도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## 6. 권리의 표시·광고 요령

저작권·저작인접권·출판권·배타적발행권·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물의 표지 등에 다음과 같이 등록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예) ‘저작권등록 제C-0000-000000호’, ‘저작인접권등록 제N-0000-000000호’  
‘출판권등록 제C-0000-000000호’, ‘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 제C-0000-000000호’  
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등록 제D-0000-000000호’

## 7. 등록 문의

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입치팀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전 화 : [ARS]1800-5455

팩 스 : 02-6007-1435

주 소 : [진주]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1층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입치팀

[서울]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(동자동) 게이트웨이가타워 5층

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입치팀

※ 위의 사항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